

가입 · 탈퇴 규정

제정 2016. 4. 1

개정 2017.12.22

개정 2018. 8.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규약 제6조 및 제11조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경북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규약 제8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종목단체가 규약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입신청서류) ①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5. 단체의 규약 및 제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7.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8.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9. 시 · 군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10.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1.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2.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3. 해당 단체의 중앙경기단체에 관한 참고자료

②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 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12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해당 시·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군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8. 도체육회의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시·군종목단체가 6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체육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9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해당 시·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군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8.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올림픽종목은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시·군종목단체가 4개 이상, 아시안

게임 종목은 1개 이상 조직되어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5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해당 시·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군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도체육회의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규약 제11조에 따른다.

②도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종목과 아시안게임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③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부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에 따른 경과 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제8조(등급 및 가입심의) ①도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 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단체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되며, 본도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도체육회는 등급심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자체 심의회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종목단체가 규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②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제명 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규약,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
- ③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구)경북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경북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 대상인 경우 해당 종목단체가 통합하였을 때 회원종목단체가 된다. 다만, 통합 대상 단체가 2016년 3월 28일 이후에도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되며, 통합하여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회원종목단체로 본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단체가 된 회원종목단체는 규약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이 가능한 단체로 본다.

③(구)경북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경북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회원등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경북체육회 정가맹단체와 (구)경북생활체육회 정회원단체가 통합한 경우, 정회원단체가 된다.

나. (구)경북체육회 정가맹단체와 (구)경북생활체육회의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가 통합한 경우, 정회원단체가 된다.

다. (구)경북체육회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와 (구)경북생활체육회 정회원단체가 통합한 경우, 정회원단체가 된다.

라. (구)경북체육회 인정단체와 (구)경북민생활체육회 인정단체가 통합한 경우, 인정단체가 된다.

④(구)경북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구)경북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 대상이 아닌 경우,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된다.

제3조(등급심의 등) ①체육회는 매년 회원단체의 등급 심의를 하여야 하며, 최초의 등급 심의는 이 규정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1항제4호는 제1항에 따른 등급 심의 시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 10분의 4 이상

나.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10분의 7 이상

다.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 10분의 9 이상

라.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 10분의 10

부 칙(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도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사 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 소								
실 거 주 지				연 락 처	자택전화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직장전화 :			
				휴대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경 력	기 관, 업 체 및 정 당, 사 회 단 체 명	기 간	직 책(직 급)	상 별 관 계(일 자)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 주 국 가	기 간	거 주 목 적	동 반 가 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 종 계 급	군 번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p>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작 성 자 성 명			년 월 일 인(서명 또는 날인)					

